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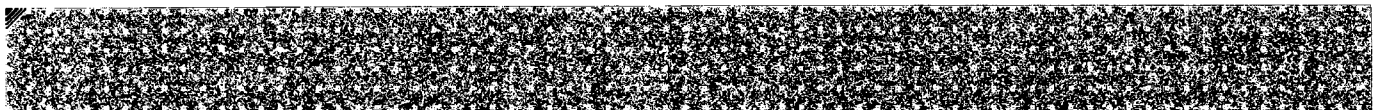
판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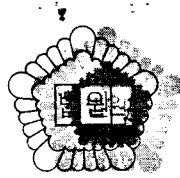
사 건 2023노599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조민 (620419-00000000), 선장
주거 양산시 평산로 101-20, 2차 106동 1104호(평산동, 양산평
산동삼한사랑채)
등록기준지 영천시 금호읍 강정길 65-3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정원(기소), 유세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박성제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고단372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범죄 처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그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이 상이하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1호의 '인근소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집시법이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야기한 소음이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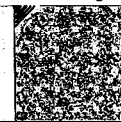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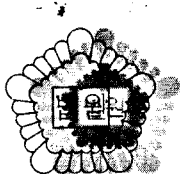
원심은 1인 시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1호의 '인근소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집시법이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이 적용되고, 피고인이 야기한 소음이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



판사 박세정 _____

판사 전정우 _____